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안 번호	2970
----------	------

제출년월일 : 2017.03.30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대행업무의 효율성 강화
-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대행업체간의 자발적 선순환 경쟁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
-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

□ 주요내용

- 가. 평가의 원칙 규정(안 제4조)
- 나. 평가실시 규정(안 제7조)
- 다. 현장평가단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9조)
- 라. 평가결과의 통지(안 제10조)
- 마. 평가결과 조치 규정(안 제11조)
- 바. 평가결과의 공개 규정(안 제13조)

□ 제정조례안 : 불임 1

□ 예산수반사항 : 불임 2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 3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7. 2. 21. ~ 2017. 3. 13. (20일간)

□ 기타사항

- 방침결정문 : 불임 4

< 불임 1 >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안산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안산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현장 확인, 수거 후의 주택가 등 청결상태, 차고지·차량·장비 및 시설물 관리상태 등에 대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서류 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와 민원 처리사항,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및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평가원칙)
- ① 대행업체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대행업체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③ 대행업체 평가는 가급적 평가종류별 평가항목이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 ④ 대행업체 평가의 결과는 공개하여 평가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평가대상 및 내용)
- ① 이 조례에 따른 평가대상은 대행업체로 한다.
 - ②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의 적정 임금지급, 근로자 환경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 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2장 평가절차

제6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평가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평가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실시)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및 내용에 대하여 현장 평가, 서류 평가, 주민 만족도 평가를 연 1회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 종류별 평가방법 및 배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자료요청 등) ① 시장은 대행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 · 서류 등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협조 등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대행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대행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주민 및 민간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단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10조(평가결과 통지)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평가가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해당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대행업체의 대표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결과의 조치 등) ①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대해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우대조치 및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이행사항의 확인·점검) ① 시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사항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점검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제13조(평가결과의 공개 등) ①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자원순환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자원순환과장 정 천 수
	담당·팀장 직위·성명	청소정책계장 김 성 수
	담당자 성명·전화	김 기 배 (행정 2259)

[별표 1]

대행업체 평가방법 및 배점 기준표(제7조제3항 관련)

1. 평가 종류

- 가. 현장 평가 : 연 1회(하반기 중)
- 나. 서류 평가 : 연 1회(하반기 중)
- 다. 주민만족도 평가 : 연 1회(하반기 중)

2. 평가 배점

총점	현장 평가	서류 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비고
100점	40점	30점	30점	

3. 평가항목

가. 현장 평가

- 1) 평가방향 :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의 현장, 수거 후의 주택 및 상가 지역의 청결상태, 차고지, 수집운반차량,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 현장의 청결성과 내실 정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
- 2) 평가내용 : 바른 수거 여부, 청소서비스 종합만족도, 인력관리, 장비관리, 시설관리

나. 서류 평가

- 1) 평가방향 : 대행업체의 인력관리, 장비 및 안전관리 등 서비스를 생산할 기반에 대하여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평가
- 2) 평가내용 : 민원처리 실태, 인력관리 실태, 장비관리 실태, 안전관리 실태,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주민 교육과 안산시 시책사업에 참여 정도

다. 주민만족도 평가

- 1) 평가방향 : 객관성 확보를 위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평가
- 2) 평가내용 : 바른 수거 여부, 생활환경 보전 노력, 주민을 대하는 친절도, 종합만족도

4. 평가방법

- 가. 현장 평가 : 단독주택지역, 공동주택, 상가지역별 표본수를 추출하여 평가 항목별 조사표에 따라 평가
- 나. 서류 평가 : 담당 공무원이 대행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 병행
- 다. 주민만족도 평가 : 업체별 지역주민(20세 이상 성인 남녀)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

[별표 2]

대행업체 평가결과 및 적용기준(제11조제1항 관련)

등급	평가점수	적 용	비 고
탁월	90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대조치 ◦ 포상금 : 탁월등급 중 1위 업체에 300만원 지급 ◦ 표창 : 탁월 및 우수업체 중 상위 2개 업체에 수여(단, 포상금 지급 업체 제외) 	
우수	80점 이상 90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보통	70점 이상 80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이익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기 계약 시 계약금의 500만원 차감 	
미흡	60점 이상 70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처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 2차 :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천만원) - 3회 연속 60점 미만 : 계약해지 	
부진	60점 미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1. 비용발생요인

- 조례안 제9조제3항
- 현장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조례안 제11조제1항
- 평가결과 탁월등급 중 1위 업체에 대한 포상금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미작성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 포상금 : 3,000,000원 × 1개소 = 3,000,000원
- 현장평가단 운영 : 50,000원 × 12명 × 5일 = 3,000,000원

4. 작성자 : 환경에너지교통국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2970
------------	------

제안년월일 : 2017년 4월 19일
제 안 자 : 도시환경위원장

□ 수정이유

- 안 제7조(평가조건)제3항에서 평가실시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평과결과에 따라 평가 등급이 탁월·우수한 업체와 미흡 및 부진한 업체에 대한 적용기준을 수정함.

□ 주요내용

- 안 제7조의 평가실시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7조제3 항).
- 안 [별표 2]에서 탁월·우수한 업체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은 제외하고 1개 업체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고 미흡한 업체에 대하여는 계약금 1,000만원을 차감,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으로 2회 연속으로 부진한 업체에 대하여는 계약 해지하도록 규정함.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

안 제7조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을 “제2항의 평가를 위해 필요한” 으로 한다.

안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대행업체 평가결과 및 적용기준(제11조제1항 관련)

등급	평가점수	적 용
탁월	90점 이상	
우수	80점 이상 90점 미만	• 표창 : 탁월 및 우수업체 중 상위 1개 업체에 수여
보통	70점 이상 80점 미만	• 없음
미흡	60점 이상 70점 미만	• 불이익 조치 - 차기 계약 시 계약금의 1,000만원 차감
부진	60점 미만	• 행정처분 등 - 1차 :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 2차 :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천만원) - 2회 연속 60점 미만 : 계약해지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안산시 생활폐기物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대한 수정안

제 정 안	수 정 안																																				
<p>제7조(평가실시)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p> <p>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및 내용에 대하여 현장 평가, 서류 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를 연 1회 실시한다.</p> <p>③ <u>제2항에 따른 평가 종류별 평가방법 및 배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u></p>	<p>제7조(평가실시) ① ~ ② (원안과 같음).</p> <p>③ <u>제2항의 평가를 위해 필요한 평가 종류별 평가방법 및 배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u></p>																																				
<p>제8조~제13조(생략)</p> <p>[별표 1](생략)</p> <p>[별표 2]</p>	<p>제8조~제13조(원안과 같음)</p> <p>[별표 1](원안과 같음)</p> <p>[별표 2]</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등급</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평가점수</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적 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탁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90점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대조치 · 포상금 : 탁월등급 중 1위 업체에 300만원 지급 · 표창 : 탁월 및 우수업체 중 상위 2개 업체에 수여 (단, 포상금 지급 업체 제외)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우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80점 이상 90점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보통</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70점 이상 80점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이익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기 계약 시 계약금의 500만원 차감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미흡</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60점 이상 70점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처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 2차 :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천만원) - 3회 연속 60점 미만 : 계약해지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부진</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60점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처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 2차 :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천만원) - 2회 연속 60점 미만 : 계약해지 </td></tr> </tbody> </table>	등급	평가점수	적 용	탁월	90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대조치 · 포상금 : 탁월등급 중 1위 업체에 300만원 지급 · 표창 : 탁월 및 우수업체 중 상위 2개 업체에 수여 (단, 포상금 지급 업체 제외) 	우수	80점 이상 90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보통	70점 이상 80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이익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기 계약 시 계약금의 500만원 차감 	미흡	60점 이상 70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처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 2차 :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천만원) - 3회 연속 60점 미만 : 계약해지 	부진	60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처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 2차 :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천만원) - 2회 연속 60점 미만 : 계약해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등급</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평가점수</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적 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탁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90점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창 : 탁월 및 우수업체 중 상위 1개 업체에 수여 </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우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80점 이상 90점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보통</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70점 이상 80점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이익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기 계약 시 계약금의 1,000만원 차감 </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미흡</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60점 이상 70점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처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 2차 :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천만원) - 2회 연속 60점 미만 : 계약해지 </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부진</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60점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처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 2차 :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천만원) - 2회 연속 60점 미만 : 계약해지 </td></tr> </tbody> </table>	등급	평가점수	적 용	탁월	90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창 : 탁월 및 우수업체 중 상위 1개 업체에 수여 	우수	80점 이상 90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보통	70점 이상 80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이익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기 계약 시 계약금의 1,000만원 차감 	미흡	60점 이상 70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처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 2차 :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천만원) - 2회 연속 60점 미만 : 계약해지 	부진	60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처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 2차 :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천만원) - 2회 연속 60점 미만 : 계약해지
등급	평가점수	적 용																																			
탁월	90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대조치 · 포상금 : 탁월등급 중 1위 업체에 300만원 지급 · 표창 : 탁월 및 우수업체 중 상위 2개 업체에 수여 (단, 포상금 지급 업체 제외) 																																			
우수	80점 이상 90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보통	70점 이상 80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이익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기 계약 시 계약금의 500만원 차감 																																			
미흡	60점 이상 70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처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 2차 :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천만원) - 3회 연속 60점 미만 : 계약해지 																																			
부진	60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처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 2차 :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천만원) - 2회 연속 60점 미만 : 계약해지 																																			
등급	평가점수	적 용																																			
탁월	90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창 : 탁월 및 우수업체 중 상위 1개 업체에 수여 																																			
우수	80점 이상 90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보통	70점 이상 80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이익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기 계약 시 계약금의 1,000만원 차감 																																			
미흡	60점 이상 70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처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 2차 :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천만원) - 2회 연속 60점 미만 : 계약해지 																																			
부진	60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처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 2차 :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천만원) - 2회 연속 60점 미만 : 계약해지 																																			